

의안번호	제 914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1년 11월 17일

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1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11. 17.

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 행정기관 및 타시·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일·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

## 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: 별첨

나. 비용추계서: 별첨

다. 관계법령: 별첨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5만원”을 “6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3조(당직수당 지급) 일·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 1회당 <u>5만원</u> 으로 한다.	제3조(당직수당 지급) ----- ----- ----- ----- <u>6만원</u> ----- 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 행정기관 및 타시·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일·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필요 비용

### 3. 관련조문

- 지방공무원법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  - 일·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

#### 나. 추계 결과

연간 소요비용 추계		연도별 소요비용 추계(단위: 천원)					
산출기초	합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합계
1. 당직수당	1,735,920	347,760	345,600	347,760	348,480	346,320	1,735,920
가. 당직수당	1,735,920	347,760	345,600	347,760	348,480	346,320	1,735,920

#### 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: 붙임

6. 작성자: 행정국 총무과장 안용모(부서: 총무팀 주무관 윤세광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	347,760	345,600	347,760	348,480	346,320	1,735,920
세 출							
당직수당		347,760	345,600	347,760	348,480	346,320	1,735,92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347,760	345,600	347,760	348,480	346,320	1,735,920
	국고보조금						
	보통교부금	347,760	345,600	347,760	348,480	346,320	1,735,920
	특별교부금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자체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

## 관계법령

지방공무원법[법률 제18208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